

의안번호	제 671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제 안 자	행정문화위원장
제안연월일	2021년 3월 12일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의안 번호	671
----------	-----

제안연월일 : 2021년 3월 12일

제안자 : 행정문화위원장

제안 이유

- 지방분권의 핵심이자 지방정부의 숙원이었던 자치경찰제가 지난 20년간의 산고 끝에 올해 7월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자치경찰제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 및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 국가기관인 시·도경찰청장이 자치경찰사무를 직접 관장하는 것은 국가경찰 소속으로 자치경찰부를 둔 것으로 이는 헌법상 자치고권(自治高權)의 침해이자 지방자치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며,
- 자치경찰의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거나 「지방자치경찰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함에도 자치경찰의 시행 근거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함께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리에 맞지 않음.
- 또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지방)기관의 전속업무인 자치경찰부를 지도·감독하는 국가위원회 성격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 및 경찰청 자치경찰 사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야 함.
- 이에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하는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하여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 관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력히 건의함.

붙임 : 건의안

보낼곳 :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자치분권위원장, 경찰청장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지방분권의 핵심이자 지방정부의 숙원이었던 자치경찰제가 지난 20년간의 산고 끝에 올해 7월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령의 제·개정 과정에서 자치경찰제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시·도경찰청장이 자치경찰사무를 직접 관장하는 것은 국가경찰 소속으로 자치경찰부를 둔 것으로 이는 헌법상 자치고권(自治高權)의 침해이자 지방자치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이 별개로 존재하듯이 자치경찰의 근거법령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거나 「지방자치경찰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함에도 자치경찰의 시행 근거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함께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주민 선출기관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도 아닌 국가경찰(지방)기관의 전속업무인 자치경찰부를 지도·감독하는 국가위원회 성격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청 자치경찰 사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는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164만 충청도민과 함께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하는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하여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 관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고권(自治高權)을 침해하는 국가경찰(지방)기관 소속의 ‘자치경찰부’는 지방자치단체 산하로 이관해야 합니다.

둘째, 자치경찰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거나 별도의 「자치경찰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자치 취지에 맞지 않는 국가위원회 성격이기에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 및 경찰청 자치경찰 사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